

## 감리지적 사례 FSS/2008-32 :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 쟁점 분야: 연결 범위
- 관련 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결정일: 2015년
- 회계결산일: '11.1.1.~'12.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B사의 PF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며, B사는 사업부진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PF대출금의 상환여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B사는 C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C은행은 A사에 공동투자조건을 제시하였다.

A사와 C은행은 공동투자조건에 따라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B사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C은행은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에 A사는 C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전부 인수하게 되었다.

A사는 보유한 B사의 전환사채 관련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없어 B사를 종속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B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사는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소유에 의한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경우 B사를 지배하고 있어 연결대상임에도, B사의 재무악화 등으로 전환사채의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어 종속회사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누락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A사는 B사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경영참여 의도가 아니라 C은행이 설계한 투자조건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전환사채의 만기수익률이 일반적인 회사채 이자율 보다 높게 설정된 것은 처음부터 전환권의 행사를 가정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며, B사가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채권자로서 투자자금 회수에 유리한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지위를 취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배력 평가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르면 잠재적 의결권의 경제적 실질은 전환권의 행사로 재무상 이윤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단 14의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행사조건 상의 제약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또한, 동 기준서 실무적용지침 IG2에는 “기업이 현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현재 행사할 수 있는 또는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은 이러한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전환사채인수계약서상 주어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 행사를 배제하는 제약조건이 없었다.

따라서 A사는 X1년말 및 X2년말 당시 전환사채에 의해 제약조건 없이 행사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A사가 소유한 B사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까지 고려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종속회사에 포함시켜야 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전환사채 취득목적 및 잠재적 의결권의 경제적 실질,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전환사채 전환권이 행사될 가능성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B사를 종속회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검토시 전환사채 등의 잠재적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과 관련한 경제적 실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도 회사가 제시하는 잠재적 의결권 등과 관련한 판단 근거에 대하여 회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